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2017. 9. 2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 안 건 명

○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12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9월 13일(수)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설치 대상인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건립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6.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화력발전소 내 토지교환 계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환된 서울시 토지를 매입하여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87년간 수도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발전소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면에는 발전소에 인접한 주민들이 매연으로 피해를 받아 발전소 이전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음

발전소의 지하화가 결정된 후, 주변지역은 지상부 공원화, 문화창작소 건립 등 복합문화벨트가 조성됨에 따라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계약체결이 완료된 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해당부서에는 예산확보 일정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변지역 구민의 여론조사 결과 다양한 요구가 있는 만큼 만족도 높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계획 : 취득에 관한 계획, 처분에 관한 계획
- 관리계획 변경 : 취득에 관한 변경, 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취 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 처 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